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2, pp. 589-616.

논문접수일 2016. 02. 02.  
심사완료일 2016. 02. 18.  
게재확정일 2016. 02. 19.

## 한·중 FTA와 既체결 주요 FTA의 원산지 규정과 절차 비교연구

- 미국 · EU · ASEAN FTA 중심으로 -

임 목 삼\* · 임 성 철\*\*

- 
- I. 서 론
  - II. 한·중 FTA와 주요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 III. 한·중 FTA와 주요 기체결 FTA 원산지 이행 절차  
비교분석
  - IV. 한·중 FTA와 주요 기체결 FTA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교분석
  - V. 결 론
- 

주제어 : 한·중 FTA, 원산지 규정, 원산지 이행 절차

---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장(부연구위원)(주저자), E-Mail : mslim@origin.or.kr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겸임교수(교신저자), E-Mail : itrustu@empas.com

오원석교수님 정년퇴직기념논문집에 본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연구는 임목삼 외 10명,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글로벌법제전략연구), 법제연구원, 2015의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무역원활화” 부분을 연구논문의 형태로 수정·보완 및 제작성하였음.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세계경제에 있어 한국 주도의 FTA가 가지는 경제적인 의의는 최초로 거대 경제권을 모두 연결한 세계 3위의 경제권역(73.45%)을 완성한다는 데 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완성 단계에 있는 FTA-Hub는 EU·미국 등 거대 소비시장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ASEAN 10개국·중국 등을 연결하는 구조로 제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사전준비는 FTA 특혜의 정도를 산출하는 능력구비와 FTA 활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구비이다.

이 두가지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규정과 이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TA에서 상품의 원산지 분야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로 구분한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를 협정문 제3장 제1절(원산지 규정)과 제2절(원산지 이행절차)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3-A는 HS 6단위별로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원산지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서 3-B는 역외가공 허용물품(310개)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3-C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상품분야 원산지 규정과 이행절차를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협정의 구성체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EU 및 ASEAN FTA 협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적시하였다.

이는 기업들에게 그간 익숙해 있는 FTA 환경에 대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고, FTA 협상 담당자나 FTA 이행법령 기안자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 세계 각국의 원산지협정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인 Pan-Euro 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고, 동아시아는 고유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없으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정인교 외 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11, p. 37). FTA 협정은 협정의 구성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형식 등에 따라 NAFTA, Pan-Euro, Pan-Asian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주요 연구는 김한성의 3인(2008), 노덕률(2010), 이영수·권순국(2011, 2012), 박철구·최장우(2012), 임목삼(2013, 2015) 이영달(2015)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포괄적인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이거나 특정 FTA 원산지 규정 및 협정 전체에 관한 연구 중심이어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주요 FTA 원산지 규정과 이행 절차의 비교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과 EU 및 ASEAN FTA 원산지 규정 등을 비교·분석하여 곧이어 다가올 Mega-FTA 시대에 기업 등이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한·중 FTA를 중심으로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한·중 FTA를 중심으로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이행 절차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중 FTA와 주요 FTA 간의 양허세율분포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서 비교·분석된 결과의 요약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한·중 FTA와 주요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 1. 원산지 상품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은 ① 제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혹은 생산된 상품, ②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③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면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3-A)을 충족하는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이다.<sup>2)</sup>

한·중 FTA는 EU, ASEAN FTA와 같이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를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국(a party)으로 하고 있어 상대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따라 일부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인정하고 있다.<sup>3)</sup>

2) 한·중 FTA 협정문 제3.2조.

## 2. 특정 상품(역외가공지역 생산품) 취급

특정 상품의 취급 조항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하고 운영되는 공업지구(이른바, 개성공단)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부속서 3-나의 품목(HS 6단위 310개 품목)에 대해 동 역외가공지역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가 생산 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시 재수입되더라도 ①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 FOB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②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 이상이 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sup>4)</sup>

양국은 공동위원회의 지원 하에 역외가공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이행점검, 공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제공, 추가적인 역외가공지역의 지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의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의 취지는 ASEAN FTA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이거나 ‘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특정 상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60% 이상’일 경우를 명시하여 ASEAN FTA의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 것<sup>5)</sup>에 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sup>6)</sup>

또한 ASEAN FTA 등에서 역외가공을 인정받은 품목이 품목분류 6단위 기준 10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한·중 FTA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품목인 310개를 확보하였다.<sup>7)</sup>

한·중 FTA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은 310개 품목 중 24개는 협정

3)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광산물 등이며,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실질적 변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정인교 외 3명, 전계서, p. 26).

4) 한·중 FTA 협정문 제3.3조.

5)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3. 제6조.

6)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다루지 않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한·중 FTA 협정에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으려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수출가격의 40%이하여야 하나, 개성공단의 경우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개성공단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7) 한-EFTA FTA의 경우 267개 품목, 한-인도 CEPA의 경우 108개 품목, 한-ASEAN·한-페루·한-콜롬비아 FTA 등은 10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한-중 FTA에서는 310개 품목에 대한 특혜가 적용되어 허용범위가 가장 넓다.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34개는 5년 이내에 철폐되며, 그 이외의 품목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3.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제3.2조의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은 ① 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 ② ①의 산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③ 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④ 당사국의 영토, 내수 혹은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어로, 양식, 채집 혹은 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⑤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 또는 취득된 ①~④를 포함하지 아니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⑥ 당사국의 영해 밖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⑦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해 밖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⑧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⑦에서 언급된 상품으로만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⑨ 당사자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얻어진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부스러기 및 폐기물 또는 당사국 내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①~⑨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sup>8)</sup>

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미국과 ASEAN, EU와의 협정은 한·중 FTA와 같이 기국주의(旗國主義; maritime flag state)<sup>9)</sup>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는 선박의 소유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 4. 역내가치포함비율

한·중 FTA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이른바,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원산지 계산은 공제법<sup>10)</sup>을 사용하

8) 한·중 FTA 협정문 제3.4조.

9) 자국의 영해 밖이라도 탐사권한이 있거나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도록 하고 있다.<sup>11)</sup>

이에 반해 한·미 FTA는 공제법 뿐만 아니라 집적법, 순원가법<sup>12)</sup>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한·ASEAN FTA는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법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 것이고, 집적법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공제법이 직접법 보다 상대적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표 1> 주요 FTA 협정별 중간재 규정의 비교

구 분	중 국	미 국	EU	ASEAN
중간재 인정여부	○	○	○	×
대상물품	자가생산품	자가생산품	역내생산품	×
근거규정	제3.5조 제3항	제6.22조 제6.3조	제5조 제1항	×

한편, 한·중 FTA는 미국과 EU의 FTA와 같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최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재<sup>13)</sup>에 대하여는 그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한·ASEAN FTA는 해당 규정이 없다.

10)  $RVC = (FOB - VNM) / FOB \times 100$ , 여기서 부가가치비율(RVC)은 %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고, FOB는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최종 수출 항구 또는 최종 수출 지점까지의 수송비용을 포함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상품 본선적재가격이다. VNM은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수입 시 재료의 CIF 가격으로 하고, 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최초 확인이 가능한 실제 지불가격(공급자 창고에서 생산자 소재지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포장비 등 다른 비용을 제외)이다.

11) 한·중 FTA 협정문 제3.5조.

12)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 제품에 대하여 순원가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품의 원가에 비원산지 재료의 비중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고려치 않아도 되어 비원산지 재료의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는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원산지재료를 의미한다.

## 5. 누적(제3.6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한 경우, 그 결합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sup>14)</sup>

한·중 FTA는 미국과 EU 및 ASEAN FTA 협정과 달리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산 공정의 누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료누적(협정 상 ‘결합’)만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누적기준이 다른 협정에 비해 경직되어 있다.<sup>15)</sup>

그러나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보면, 완전생산기준과 품목번호 변경기준 및 부가가치 발생기준으로 간편하게 원산지 기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누적 기준 종류의 적용만 고려하면 생산 공정의 누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원산지 기준의 활용 측면으로 볼 때는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한·중 FTA에서는 역외가공지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원산지 재료의 누적 정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한·ASEAN FTA와 같이 생산 공정 및 작업의 수행을 요건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중 FTA는 원산지 기준에 생산 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6. 최소 공정 또는 가공(제3.7조)

한·중 FTA의 최소 가공 규정은 한·EU FTA의 불충분한 가공 규정이나 한·ASEAN FTA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된다.

본 규정에 따라 한·중 FTA는 아래의 가공 또는 공정을 수행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 
- 14) 원산지 기준을 판정할 때, FTA 체결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생산공정이나 재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이라고 하는데, 양국에서 발생한 재료의 누적을 합산하도록 하면 품목번호의 변경 또는 부가가치의 발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용이해지고 생산공정 또한 양국에서 발생한 공정을 모두 인정해주면 가공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 변경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쉽게 된다.(한·중 FTA 협정문 제3.6조,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결정기준, 2015. 2, pp. 152~154).
- 15) 재료 누적이 한·EU와 한·미, 한·ASEAN FTA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EU와 미국에서는 양국 누적을 인정하고 ASEAN에서는 다국 누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정 누적이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EU와 ASEAN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한·ASEAN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정 누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제61류 의류의 생산 시에는 재단·봉제 공정 수행국을 1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ASEAN 회원국 역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②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③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④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⑤ 방직용 섬유와 다림질 또는 압착, ⑥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⑦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⑧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⑨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⑩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⑪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⑫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⑬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⑭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⑮ 시험 또는 측정, ⑯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이나 물로 단순 희석, ⑰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⑱ 동물의 도살, ⑲ ①~⑱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sup>16)</sup>

한·중 FTA의 최소 가공 규정은 한·ASEAN과 한·EU와는 달리 ‘쪼개기(slitting), 구부리기(bending), 감기(coiling) 또는 풀기(uncoiling)’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이나 물로 단순 희석(mere dilution)’과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쪼개기 등’은 철강코일과 관련된 가공규정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중국 내 산업의 보호가 최소가공 규정을 신설한 목적으로 보이고, “단순 희석”은 우리나라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중국 백주(白酒) 시장의 경계로 판단된다.<sup>17)</sup>

‘건조나 냉장 등’의 규정은 한·EU에서 운송 중 보존공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ASEAN에서는 도축 공정 이후에 이어지는 훈제공정까지 포함<sup>18)</sup>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복잡한 식문화를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16) 한·중 FTA 협정문 제3.7조.

17) 이영달,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등에 관한 고찰”, 관세와 무역 제47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4, p. 43.

18) 한·ASEAN 협정문 제8조.



## 7. 최소허용수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품목번호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①제15류~제24류 및 제50류~제63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상품 생산에 사용된 품목번호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제15류~제24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품목번호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와 상품의 품목번호가 소호(품목번호 6자리)가 다른 경우에는 ①을 적용할 수 있으며, ③제50류~제63류의 경우에는 품목번호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전체 상품의 중량 또는 상품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sup>19)</sup>

한·미 FTA와 한·EU FTA에 있어 최소허용수준은 가격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고 있고,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섬유(HS 50류~63류)에 한해서 중량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ASEAN FTA는 섬유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 최소허용수준을 중량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중 FTA는 중량기준 또는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8. 대체가능 재료(제3.9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대체가능 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①각각의 대체가능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②생산이 수행된 당사국의 회계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sup>20)</sup>을 사용하여 대체가능 재료를 원산지 재료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가능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1)</sup>

②에 따라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회계연도에 해당 대체가능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한다.

한·중 FTA를 포함하여 미국과 EU, ASEAN과 체결한 FTA 협정 모두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대체가능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9) 한·중 FTA 협정문 제3.8조.

20)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한·EU FTA 제11조).

21) 한·중 FTA 협정문 제3.9조.

## 9. 중립재 및 세트

기 체결된 미국·EU·ASEAN FTA와 같이 한·중 FTA도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중립재(간접재료)는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sup>22)</sup>

한·미 FTA와 한·EU FTA는 중립재에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한·ASEAN FTA에서 명시하지 않은 “측매제 및 용제”를 포함하여 중립재로 명시하고 있다.

HS 통칙 제3호에 따라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세트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같이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트 FOB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때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세트 규정은 미국, EU와의 FTA 협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ASEAN FTA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10. 포장재료 및 용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기 체결한 미국과 EU 및 ASEAN FTA와 같이 한·중 FTA도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상품인지를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sup>23)</sup>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만, 품목 분류 변경기준일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에 고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와 한·중 FTA 상 수입 시 상품과 함께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않은 채 운송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상품과 일체로 간주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도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재료 혹은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한편, 한·EU FTA와 한·ASEAN FTA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는

---

22) 한·중 FTA 협정문 제3.11조.

23) 한·중 FTA 협정문 제3.12조.

상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sup>24)</sup>

### 11. 직접운송

한·중 FTA의 직접운송 규정은 다른 FTA와 유사하게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있다.<sup>25)</sup>

예외적으로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환적이나 임시 보관)하여 운송되더라도 ① 전적으로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상의 이유로 반입은 가능하지만, ② 경유국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하며, ③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하역을 하거나 운송 상 이유로 화물에서 분리 또는 재선적한 경우만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유사하다.

그러나 비당사국에 일시 보관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비당사국에 상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있다. 만일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임시 보관된 상품은 비당사국에서 보관되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한·EU FTA와 같이 비당사국을 경유한 상품이 직접 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품 수입신고 시 수입국 관세당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구 분	중국	미국	EU	ASEAN
C/O 발급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직접,공제,순원가	역외산 재료비중	직접법,공제법
직접운송	비당사국보관 3개월 이내	기간제한에 관하 규정 없음		
사후 검증	간접(동의직접)	직접	간접(참관)	간접(방문)
서류 보관	3년	5년	5년	3년
원산지증명 면제	미화 700불	미화 1,000불	미화 1,000불	미화 200불

24) 한·중 FTA 협정문 제3.13조.

25) 한·중 FTA 협정문 제3.14조.

한·EU FTA에서는 세부적으로 보충서류에 대하여 규정<sup>26)</sup>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간편하게 통과나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B/L) 또는 수출국부터 수입국까지 모든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보관 또는 하역의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국부터 수입국까지 모든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복합운송서류와 비당사국 세관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서류가 제출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는 특징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은 이러한 보충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비당사국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 시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27)</sup>

### III. 한·중 FTA와 주요 기체결 FTA 원산지 이행 절차 비교분석

한·중 FTA 원산지 이행 절차도 기 체결된 FTA와 유사하게 원산지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신청, 기록보관, 원산지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자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협정발효 전에 개발하는데 노력하기로 규정(제3.27조)한 것이다.

이는 개정교토협약에서 채택된 ‘전자방식에 의한 물품신고서 제출’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의 취지와 연관된 규정인데,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전자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되면 대중 수출물품에 대해 중국의 수입자가 특혜적용 시 중국해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의 단계가 축소되어 보다 원활한 통관이 예상된다.

26) 한·EU FTA에서는 보충서류의 내용을 ‘제품의 정확한 설명서’,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또는 선박 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의 기재’,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7) 그 예로 중국·대만 ECFA에서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하고 있다(이영달, 전계논문, p. 45).

## 1. 원산지증명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한·ASEAN과 같이 기관증명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권한있는 수출국 기관이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에 신청을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sup>28)</sup>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시기와 유효기간<sup>29)</sup>, 소급발급 규정<sup>30)</sup>, 재발급 규정<sup>31)</sup> 등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행의 기관증명 발급 체계를 준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단,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는 현행 법에서 선적 전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선적 전을 포함하여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근무일 내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ASEAN<sup>32)</sup>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자에 대한 세관당국의 원산지증명서 절차요건 준수여부의 확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여타의 FTA 협정과 같이 양국은 발급기관의 명칭과 인장 등을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변경 시에도 즉시 알려야 하는데, 한·중 FTA에서 변경된 사항은 통지일로부터 7근무일 후 또는 통보에 적시된 날짜보다 늦은 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특징적인 규정이 있다.<sup>33)</sup>

## 2. 특혜관세의 신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자는 ①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진술을 세관신고 시 작성하고, ②수입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

28) 한·중 FTA 협정문 제3.15조.

29) 발급한 날로부터 1년간.

30)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유효한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 발급 문구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1) 증명서의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는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이 입증되면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에 진정등본을 발급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dated”문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32) 한·ASEAN FTA의 경우에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규정하고 있다(한·ASEAN 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33) 한·중 FTA 협정문 제3.16조.

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③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관련한 원본 원산지 증명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sup>34)</sup>

다만 전자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중국과 ASEAN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는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제출을 별도로(검증 등의 필요 목적 시) 요청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는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는 다른 기체결 FTA와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후 FTA 특혜신청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는 수입일(수입신고수리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수입자는 ①상품수입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던 것을 입증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②수입국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한·중 FTA는 특징적으로 수입자에게 특혜관세적용신청을 위한 사전조건으로 수입 시 세관에 특혜관세적용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특혜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EU, ASEAN은 사후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하여 FTA 특례법과 같이 내국법에 규정하고 있다.

### 3.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한·중 FTA는 기 체결 FTA와 달리 과세가격 미화 700불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sup>35)</sup>

미국이나 EU와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은 미화 1천불 이하이고<sup>36)</sup>, 한·ASEAN의 경우는 FOB 200불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 C/O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한·인도 CEPA와 금액을 미화 200불로 제한하고 있는 한·ASEAN FTA를 제외하고 여타의 협정 대부분이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34) 한·중 FTA 협정문 제3.17조, 제3.18조.

35) 한·중 FTA 협정문 제3.19조.

36) 한·EU FTA는 EU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 또는 여행자의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이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을 면제해주는 것에 비해 중국은 기 체결한 FTA에서 미화 600불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협상의 결과이다.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 또는 다른 수입 건의 일부일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기록유지요건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한·미FTA와 한·EU FTA와 달리 생산자 또는 수출자, 서류발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협정은 5년을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서류보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국의 생산자, 수출자, 발급기관의 서류보관 기간은 3년이다.<sup>37)</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TA 특례법에서 서류보관기간을 수입자, 생산자와 수출자, 발급기관 등에 공통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3년이 적용된다.<sup>38)</sup>

보관해야 할 서류에는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등의 기록 등을 포함한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보관방식은 자국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여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발급기관 등이 선택할 수 있다.

#### 5.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EU와 ASEAN 등 기 체결 FTA 협정과 한·중 FTA 협정 모두 원산지 증명서와 세관 서면신고 간 경미한 불일치가 있어도, 원산지 증명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는 서류가 불일치 되더라도 물품이 실제 물품과 일치하면 수

37) 한·중 FTA 협정문 제3.20조.

38) 법의 적용순위에 있어 협정과 국내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협정의 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입자는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5근무일 이상 30일 근무일 이하의 수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6. 원산지 검증

한·중 FTA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이 기관발급이므로 원산지검증에 있어서도 EU나 ASEA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지 세관당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 세관당국의 동행 방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접검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sup>39)</sup>

〈표 3〉 주요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식

FTA	미국	EU	ASEAN	중국
검증방식	직접	간접 (조사참석 가능)	간접 후 직접	간접 후 직접(동행*)
검증주체	수입국	수출국	간접은 수출국 직접은 수입국	수출국
검증회신	-	10개월	각 6개월	각 6개월

\* 수출국 세관에 방문검증 요청 후 현지 세관직원과 함께 검증 수행(수출국 세관 주도)

한·ASEAN FTA에서 직접검증은 현지 세관당국의 동행없이 수입국 세관이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직접검증은 현지 세관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행은 물론이고 조사의 주도권도 수출국 세관당국에 있어 한·EU FTA와 같이 수출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시 수입국 세관당국이 참석요청이 가능한 수준<sup>40)</sup>과 유사하여 유명무실한 직접검증 규정이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검증 프로세스는 수입국 세관이 ①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요청 ②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고, 직접검증 프로세스는 ③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문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수출국 세관당국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검증결과와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결과를 받으면 3개월 이

39) 한·중 FTA 협정문 제3.23조.

40) 한·EU FTA 협정, 세관 분야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요청의 수행).



내에 특혜적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국 세관은 수출국 세관의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현지방문을 수출국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국은 최소방문 30일 이전에 수출국 세관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하고, 수출국 세관은 서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요청이 가능)에 수용여부를 수입국에 통보한다.

수출국 세관에서 방문검증에 동의하면 수입국 세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출국 세관직원의 동행 하에 실시하고, 방문검증결과(원산지 상품 여부)를 서면으로 수출국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수출국 세관을 통해 제출(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수입국 세관은 이의제기에 대해 30일 이내에 최종결정사항을 수출국 세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지방문 검증은 실제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최종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수입국 세관은 ① 수입자가 1개월 이내에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출국 세관이 6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간접검증 결과 또는 방문검증 결과에 원산지 상품의 진위판별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④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방문검증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⑤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검증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⑥ 상품이 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⑦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협정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⑧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 7. 전자적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등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이행 전에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협정에 명문화하였다.<sup>41)</sup>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양국간 원산지 증명서 정보가 교환되면 원산지 증명서의 세관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중국은 국내법 상 특혜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있어, 본 시스템의 구축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41) 한·중 FTA 협정문 제3.27조.

〈표 4〉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이행 절차 비교

구 분	중국	미국	EU	ASEAN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권한 받은 대리인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	수출자 자율발급	각국의 지정기관에서 발급
C/O 증명서 서식	통일증명서식 부속서 3-C	제한 없음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	통일증명서식 AK-Form
유효기간	1년	4년	1년	1년
발급기한	선적 전 또는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적 전		
소급발급	선적일로부터 1년			

#### IV. 한·중 FTA와 주요 기체결 FTA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교분석

##### 1. 한·중 FTA 양허세율

한·중 FTA 협정에 따라 20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대중국 교역상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고, 중국 또한 대한민국 교역상품의 92%에 대한 관세를 동기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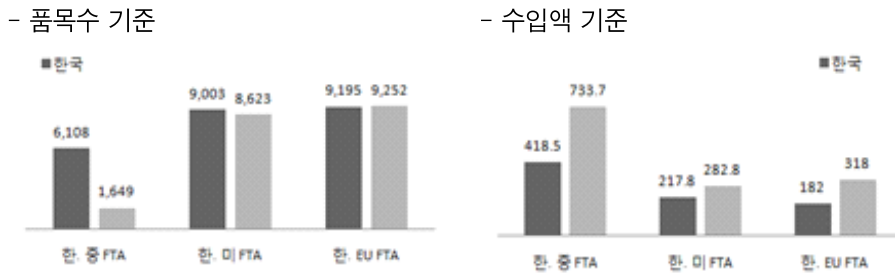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7%인 7천428개, 수입액 기준으로는 85.0%인 1천417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우리나라는 교역 품목의 92.2%인 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2%인 736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한·EU FTA나 한·미 FTA의 경우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 비하면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4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2014. 11.

<그림 1> 주요 FTA 협정별 양허세율 즉시철폐 현황<sup>43)</sup>

단위 : 개, 억불



양허세율 중 즉시철폐의 비중을 보더라도 한·미나 한·EU FTA의 즉시철폐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중 FTA는 50% 수준을 밑돌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에서 중국은 농산물 품목의 91%, 수산물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쌀을 포함하여 국내 농축산물 품목의 30%(548개 품목)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두, 참깨, 팥 등 일부 품목은 할당관세(TRQ) 대상으로, 김치 등은 부분관세감축 대상으로 구분하여 높은 수준의 국내시장보호 결과를 가져왔다.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목의 86.2%, 수입액 기준으로 35.7%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낙지(산 것 신선 냉동), 아귀(신선냉장 냉동), 대구(신선냉장), 바지락(산 것 신선냉장), 조미오징어, 오징어(기타 조제), 바지락(냉동 염장), 소라(조제), 해파리(조제) 등 14개(2.2%) 품목 등은 초민감품목군<sup>44)</sup>으로 구분하였다.<sup>45)</sup>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업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였고, 중국은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한·중 모두 자국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대부분의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43) 산업통상자원부의 상계서에서 협정 별 즉시철폐품목의 양허세율과 수입액 기준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44) 초민감품목(high sensitive track)이란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 철폐 제외, 계절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한·중 FTA에서는 품목 수 기준 10%(수입액 기준 15%)에 해당된다.  
 45) 해양수산부,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2015. 3. 3.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과 클러치, 조향장치 등과 관련된 주요 부품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버스와 화물차는 10년~15년 장기 철폐 대상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완성차에 대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전기전자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우위이므로 중국은 대형가전제품, 2차 전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 경쟁력이 열위인 품목을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대상으로 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전기(전동기, 변압기 등)를 장기 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철강의 경우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후판 등에 대하여 중국 측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주철관에 대하여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폐로망간 등 합금철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을 위하여 장기 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에 공급이 부족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와 고부가가치제품인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었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주로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시장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초산에틸 등과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의 제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중국은 경쟁우위에 있어 화섬직물, 편직물, 유아복 등 화섬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어려운 재킷, 코트, 스웨터 등 의류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였고, 면사, 모사, 면직물, 편직제 의류 등의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한·중 FTA는 상품의 생산과정·교역패턴·글로벌 아웃소싱 등 양국 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HS 6단위기준 5,205개 품목에 대해 품목번호 변경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EU나 ASEAN과 유사하게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4단위 품목번호 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EU나 ASEAN에서 규정한 부가가치기준과의 선택기준(CC, CTH, CTSH or RVC)<sup>46)</sup> 혹은 결

46) RVC(Regional Value Contents, 역내가치포함비율 이른바, 부가가치기준), CTSH(Change of

합기준(CTH and RVC)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간편하게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였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은 한·미 FTA 보다 적은 161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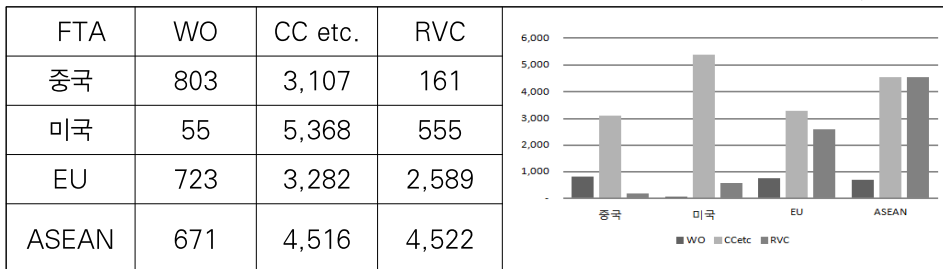
품목군별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면 한·중 FTA에서는 기초농수축산물(HS 제1류~제14류)에 대하여 HS 6단위 기준 640개의 품목 모두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EU나 ASEAN과 같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에서 품목 번호 변경 기준은 3,107개(60%)로 원산지 기준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 체결 FTA와 같이 CTH 기준 적용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으며<sup>47)</sup>, 부가가치 기준 적용도 161개에 불과하고, 이를 선택하거나 결합한 조건은 1,134개로 ASEAN 48백여 개, EU 28백여 개, 미국 14백여 개 보다 적다.

특히, 부가가치 기준은 공제법(BD) 기준으로 역내에서 40~50% 범위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제품 3.1%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sup>48)</sup>

<표 5> 중·미·EU·ASEAN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중

(단위; 개)



\* 협정 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한·중 FTA에서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yarn)가 역내에서 방적되었거나, 직물은 방적과 제직이 수행되었거나, 의류는 재단·봉제 혹은 부가가치

Tariff Sub-Heading, 6단위 품목번호 변경기준).

- 47) 투입원재료의 일부가 원산지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127개 품목 4.1%에 지나지 않고, 해당 품목도 화학공업 생산품(HS 제28류~제40류)과 비금속제품(HS 제72류~제83류)에 집중되어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비원산지 재료의 투입이 가능하다.
- 48) 수산물 조제품(HS 1604~1605) 29개 품목 RVC 45%, 기계류(HS 84) 74개 품목 RVC 40% 50개 RVC 45% 24개 품목, 자동차류(HS 87류) RVC 40% 24개 RVC 50% 32개 품목, 정밀기기(HS 90) RVC 45% 2개 품목.

40%가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섬유분야는 선택기준이 한·중 FTA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되기는 했으나 미국이나 EU, ASEAN에 특수공정이 추가된 선택기준이나 결합기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의 적용이나 준수가 비교적 쉬어 관련 업계의 FTA 활용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경쟁우위에 있는 화학공업제품이나 일반 기계류, 철강제품의 경우도 주로 CTH가 주로 적용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아도 FTA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밀기계는 매우 엄격한 조합기준(CTH and RVC 50%)을 채택하고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sup>49)</sup>

한편, 석유·화학 등의 품목에 특수공정기준(화학반응, 정제, 혼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중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이점이 희석되었다.

## V. 결 론

한·중 FTA를 계기로 완성 단계에 있는 FTA-Hub는 EU·미국 등 거대 소비시장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ASEAN 10개국·중국 등을 연결하는 구조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나라와 교역량 기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EU 및 ASEAN을 중심으로 상품분야의 협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이행절차, 양허세율과 원산지 기준은 특정적인 부분이 다소 있었다.

원산지 규정부터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규정에서

1) 한·중 FTA는 미국과 EU 및 ASEAN FTA 협정과 달리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산 공정의 누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료 누적(협정 상 ‘결합’)만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누적 기준이 다른 협정에 비해 경직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보면, 완전생산기준과 품목번호 변경기준 및

49) 원산지 기준 중 가장 충족이 어려운 결합기준(품목번호 변경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은 HS 84류(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36개 품목과 HS 87류(자동차와 이들의 부분품) 9개 품목에 적용된다.

부가가치 발생기준으로 간편하게 원산지 기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이 적절할 것이다.

2) 한·중 FTA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의 계산은 공제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미국과 EU의 FTA와 같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재료 활용이 가능하다.

3) 한·중 FTA의 최소가공 규정은 한·ASEAN과 한·EU와는 달리 ‘쪼개기(slitting), 구부리기(bending), 감기(coiling) 또는 풀기(uncoiling)’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이나 물로 단순 희석(merely dilution)’과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명문화하여 생산 공정에 대한 예외적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품목분류를 활용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한·미 FTA와 한·EU FTA에 있어 최소허용수준은 가격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고 있고,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섬유(HS 50류~63류)에 한해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을 중량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있다. 아울러 한·ASEAN FTA는 섬유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 최소허용수준을 중량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중 FTA는 중량기준 또는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한·중 FTA는 미국이나 때와 같이 직접운송의 원칙의 예외로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비당사국의 세관통제 하에 있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당사국에 일시 보관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비당사국에 상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있다. 만일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 선박의 국적 기준은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한·EU FTA와 같이 조세회피를 위한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소유 기준(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산지 이행절차에서는

1)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는 현행 법에서 선적 전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선적 전을 포함하여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근무일 내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과 선적일자의 비교에서 유의해야 한다.

2) 한·중 FTA는 특징적으로 수입자에게 특혜관세적용신청을 위한 사전조건으로 수입 시 세관에 특혜관세적용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특혜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한·중 FTA에서 서류보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국의 수입자·생산자·수출자·발급기관 등의 서류보관 기간은 3년이다.

4) 한·중 FTA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지 세관당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 세관당국의 동행 방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접 검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중 FTA의 직접검증은 현지 세관당국의 동의를 있어야 할 만 아니라 동행은 물론이고 조사의 주도권도 수출국 세관당국에 있어 유명무실한 직접검증 규정이다.

5) 한·중 FTA는 서류가 불일치되더라도 물품이 실제 물품과 일치하면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5근무일 이상 30일 근무일 이하의 수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한·중 FTA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한·EU FTA나 한·미 FTA의 경우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 비하면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양허세율 중 즉시철폐의 비중을 보더라도 한·미나 한·EU FTA의 즉시철폐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중 FTA는 50% 수준을 밑돌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에서 품목 번호 변경 기준은 3,107개(60%)로 원산지 기준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 체결 FTA와 같이 CTH 기준 적용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으며, 부가가치 기준 적용도 161개에 불과하고, 이를 선택하거나 결합한 조건은 1,134개로 ASEAN 48백여 개, EU 28백여 개, 미국 14백여 개 보다 적다.

부가가치기준도 공제법(BD) 기준으로 역내에서 40~50% 범위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제품 3.1%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한국관세학회, 2012.
- \_\_\_\_\_, 오현석,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7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2.
- 김한성 외 3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김제남, “한·중 FTA 쟁점과 재협상의 필요성”, 국회의원 자료집, 2015. 6. 17.
-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 현상의 결정 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 문준조 외 4명,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 박철구·최장우, “FTA 원산지정보 유통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8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2.
- 안병수 외 4명, “각국의 FTA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4. 12.
- 이기평·임목삼 외 9명,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 법제연구원, 2015. 10.
- 이영달,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등에 관한 고찰”, 관세와 무역 제47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4.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임목삼,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8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13.
- \_\_\_\_\_,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 정인교 외 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11.
- 정재호 외 2명,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 규정 연구, 조세연구원, 2012. 8.

최미수·임목삼, “한국의 FTA 효과와 추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 16호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5.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 리포트, 2015. 4.

\_\_\_\_\_, FTA인재개발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결정기준, 2015. 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2014. 11.

\_\_\_\_\_,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 자료집, 2015. 4.

해양수산부,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2015. 3.

중소기업청, 한·중 FTA 협정문 및 관세 양허표, 2015. 3.

한·중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한·미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한·EU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한·ASEAN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and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 in KORCHINA FTA and Main Korea's Existing FTAs - Focused on KORUS · KOREU · KORASEAN FTA -**

Mok-Sam LIM · Sung-Chul LIM

The reviewing of an analysis of the Korea-China FTA due to guidance introduced for the new regulations or exceptional regulations compared to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

Commodity sectors in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the majority in the country and trade criteria analysis resul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rules of origin and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rate of origin and the origin preferential specific rules are somewhat difference, bu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re already quite consistent with the Korea customs system.

Relatively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in KORCHINA FTA is that I'm to use the deduction method can comprehensively reflect a regional value ratio,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as the FTA in the US and EU use the product non it's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s can be utilized for intermediate goods.

Second, even if a non-treaty country in the middle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transport rules, and acknowledge the country of origin are under customs control,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period are temporarily stored in a non-treaty countries separately, that period goods imported into the non-treaty countries and up to three months from the day. If the situation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be greater than three months, but has so exceed six months.

Third,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in the Korea-China FTA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s as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that can be utilized originating materials for intermediate goods. It is expected that higher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Meanwhile, Korea-China FTA has provisions to allow request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ed on imports Customs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pply pre-condition for a preferential tariff applied to the importer. In other words, if the import customs tariff preference when applying post-intention not to advance is to be noted that any preferential treatment to prevent the later application.

Keywords : KORCHINA FTA, Rules of Origin,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